

第280回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3 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1月29日(木)

場 所 行政安全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선거법 등 개정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청원(계속)

審査된案件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송영선·이경제·조전혁·유성엽·신상진·신학용·구본철·권경석·안경률·양정례·이한성·김무성·강성천·김희철·정하근·홍정욱·안상수·정양석·이진삼·임태희·이정선·정해걸·김성수·나경원·손범규·김동성·심재철·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2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이윤석·우윤근·주승용·김성곤·최인기·송민순·송훈석·조영택·강창일·김부겸·허범도·변웅전·김영록 의원 발의)(계속) 2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희철·김우남·송민순·최인기·김재윤·강기정·이진삼·이윤석·김종률·박기춘·우윤근 의원 발의)(계속) 2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이한성·유기준·안상수·강성천·김성태·정미경·홍일표·이인기·남경필·김효재·구본철·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2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김효재·박종희·성윤환·송광호·유재중·윤영·이명규·이진복·이한성·정진섭·홍정욱 의원 발의)(계속) 2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송영길·양승조·오제세·서종표·장세환·이용삼·최문순·강봉균·신학용·강기정·전병헌·김동철·이종걸·김재윤·김재균·김우남·김영진·천정배·김성순·전혜숙·박기춘·박선숙·주승용·전현희·김유정·유성엽·우제창·김종률 의원 발의)(계속) 2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장제원·유정현·이범래·원유철·

정갑윤·신지호·김태원·안경률·이인기·이은재·김성조 의원 발의)(계속) 3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이한성·유기준·안상수·강성천·정미경·홍일표·이인기·남경필·김효재·구본철·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3

1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

1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송영길·이춘석·김영진·김재운·김상희·안규백·전현희·강창일·김성순·장세환·최문순·박상은·조정식·강기정·김유정·유선호·우윤근·정장선·신낙균·원혜영·원희룡·김성희·정옥임·유성엽·황우여·우제창·김종률 의원 발의)(계속) 3

1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장제원·유정현·이범래·원유철·정갑윤·신지호·김태원·안경률·이인기·이은재·김성조 의원 발의)(계속) 3

1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4.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선거법 등 개정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청원(홍준표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3

(19시08분 개의)

○委員長 趙鎭衡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 오늘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재외국민들도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고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게 된 것은 우리 정치사의 한 획을 장식하는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선상투표 및 추가 투표소 설치 등 아직 협의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시행하고 난 후 차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송영선·이경재·조전혁·유성엽·신상진·신학용·구본철·권경석·안경률·양정례·이한성·김무성·강성

천·김희철·정하균·홍정욱·안상수·정양석·이진삼·임태희·이정선·정해걸·김성수·나경원·손범규·김동성·심재철·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이윤석·우윤근·주승용·김성곤·최인기·송민순·송훈석·조영택·강창일·김부겸·허범도·변용진·김영록 의원 발의)(계속)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희철·김우남·송민순·최인기·김재운·강기정·이진삼·이윤석·김종률·박기춘·우윤근 의원 발의)(계속)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이한성·유기준·안상수·강성천·김성태·정미경·홍일표·이인기·남경필·김효재·구본철·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김효재·박종희·성윤환·송광호·유재중·윤영·이명규·이진복·이한성·정진섭·홍정욱 의원 발의)(계속)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송영길·양승조·오제세·서종표·장세환·이용삼·최문순·강봉균·신학용·강기정·전병헌·김동철·이종걸·김재운·김재균·김우남·김영진·천정배·김성순·전혜숙·박기춘·박선숙·주승용·전현희·김유정·유성엽·우제창·김종률 의원 발의)(계속)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장제원·유정현·이범래·원유철·정갑윤·신지호·김태원·안경률·이인기·이은재·김성조 의원 발의)(계속)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이한성·유기준·안상수·강성천·정미경·홍일표·이인기·남경필·김효재·구본철·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1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송영길·이춘석·김영진·김재운·김상희·안규백·전현희·강창일·김성순·장세환·최문순·박상은·조정식·강기정·김유정·유선호·우윤근·정장선·신낙균·원혜영·원희룡·김성희·정옥임·유성엽·황우여·우제창·김종률 의원 발의)(계속)

1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장제원·유정현·이범래·원유철·정갑윤·신지호·김태원·안경률·이인기·이은재·김성조 의원 발의)(계속)

1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선거법 등 개정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청원**(홍준표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19시11분)

○**委員長 趙鎭衡**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선거법 등 개정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청원을 일괄하여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권경석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권경석** 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권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강기정 위원, 김낙성 위원, 노철래 위원, 박준선 위원, 이범래 위원, 이은재 위원, 최인기 위원이 참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 박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2009년 1월 22일과 1월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질의사항,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 및 관련 청원에 대하여도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안 등 7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결과 이들 7건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국내거소를 신고한 25세 이상의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재외선거 도입에 따라 일반 선거인명부의 작성권자를 구·시·군의 장으로 통일하고,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확정된 재외선거인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일반 선거인명부에 올리고 그 사실을 미고란에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공관별로 홀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선거사무의 집행을 위한 재외투표관리관을 두도록 하고 공관의 장이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이 되도록 하였고,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해당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과 국내 거소신고가 모두 없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구·시·군의 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

고를 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에 따라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자유로이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성된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하여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같이 이의신청, 불복신청 및 명부 누락자 구제 절차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즉시 그 명부를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와 함께 관할 시·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국내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위성으로 송출하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의한 방법, 정보통신망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만으로 제한하고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외선거의 투표는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하고 재외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하되 관할 지역에 확정된 재외선거인 수, 공관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관이 아닌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외투표소의 투표 절차는 국내의 부재자투표소 투표 절차와 동일하게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를 직접 적는 방식으로 하

도록 하였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 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표를 포장·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재외투표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하였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대표발의 안에서는 국민투표의 투표권자 및 이 법에 따른 국민투표의 투표인명부 작성 대상자에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 그 관할 구역 안에 국내 거주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투표의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실효된 관련 조문의 우선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이 법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정부 제출 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안은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 외에 선거운동 절차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계속 심의하기로 하였고, 김성곤 의원 안과 권경석 의원 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성안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국내 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는 한편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9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를 공표하도록 하는 특례사항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의원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선거법 등 개정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청원의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아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인물이 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라는 본 내용은 제1·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본 내용을 기초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참여한 각 정당이 합의하여 의결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鎭衡 권경석 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장시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8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제1항~제7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제8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제10항 정부안은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고, 제11항 및 제12항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제13항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선거법 등 개정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청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선거법 등 개정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청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에 대한 조문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부분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야 합의로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에 관한 법을 처리하고 나니 우리 정치개혁특위 위원님들께서 정말 큰 일을 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등을 통해서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 부여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외국민들이 실제 선거권을 행사하는데는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일은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아서 그 소임을 다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

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뒷바라지해 주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던 최연호 수석전문위원님과 백환기 전문위원을 비롯한 입법조사관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그리고 외교통상부, 법무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에서 이 자리에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통과시켜 준 것에 대해서 깊이 잘 새겨 주시고 미비한 점은 앞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언도 주시기 바라고 해외 여러 동포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보신 것을 잘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강기정	권경석	권영길	김낙성
김동철	김충조	김태원	노철래
박준선	신지호	이범래	이용경
장제원	정옥임	조진형	최인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전문위원	백환기

○정부측 참석자

행정안전부	
제2차관	강병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기선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권영수